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

- 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등
- 나.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 : 지역홍보센터 운영, 직거래 장터 운영,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운영, TV방송 제작 지원, SNS통한 온라인 홍보 등
- 다. 지역진흥 전문 컨설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지원, 지역 인재양성 교육 등

3. 출연현황 및 계획

가. 연도별 출연 내역(2007~)

(단위 : 백만원)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6	5	5	5	5	5	5	5	5	5	0	0	5.5	5.5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

다. 출연예정액: 5.5백만원

- 산출근거: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한국지역진흥재단 기획운영팀-1728(2019. 8. 29.)]

< 2020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근거 및 기준 >

- 출연금 배정근거: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 수(50%) + 재정력지수(50%)
 - 서울(207.9백만원) ~ 세종(29.7백만원)
- 기초 자치단체: 인구 수
 - 인구 30만명 이상 시: 13.75백만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11백만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8.25백만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5.5백만원

4. 우리군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구 분	이용실적(2007년~2019년)	이용계획(2020년)
한국 지역 진흥 재단	①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 방영 - 고성군편 촬영, 방영 (2012. 4.) ② 중앙정부청사 전광판 광고 - 2009·2012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공룡나라쇼핑몰 및 특산품 홍보 ③ 재단발간 책자 홍보 - 고성 특산품,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④ 직거래 장터 농산물 판매 참가 - 2011살아있는6회참가(36,120천원 판매) ⑤ 지역진흥소식지(e-뉴스레터) 고성소식 게재 - 고성특산물, 공룡엑스포 홍보 ⑥ 지역브랜드 활성화 및 마케팅 교육 - 고성군 공무원 5명 참석 ⑦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 지역홍보센터 - 전시관 판매관 고성군 특산품 전시 - 관광안내도 및 책자 500부 비치(2018) ⑧ 지역정보포털 및 블로그 통한 홍보 - 2018년 2회, 2019년 2회 ※ 2019년 하반기 이용계획 -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 2020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홍보 (10~11월 중) - 지역정보포털 블로그 등 SNS통한 홍보 : 가리비수산물축제 등	① KBS 6시 내고향 제작을 통한 홍보 - 가리비수산물축제 농업인의날 행사등 ②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 공룡나라쇼핑몰 및 농수산물 - 2020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③ 재단발간 책자 고성소식 홍보 - 고성관광지, 농수산물 ④ 지역진흥소식지(e-뉴스레터) 고성소식 게재 - 고성특산물, 고성관광지 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 지역홍보센터 - 전시관, 판매관 고성군 특산품 홍보물 전시 (참다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애호박, 취나물, 굴, 가리비, 멸치 등) ⑥ 직거래 장터 농산물 판매 참가 ⑦ SNS활용한 지역 축제·행사 홍보

5. 관련 법규: 붙임 참조

관 련 법 령

□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근거

①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지원) 근거

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306 출연금 :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④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7조(운영재원) :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